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##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접수일시				처리기간 15일			
신청인	성 명 (기관·단체명)					생년월일 (등록번호)				
	주 소					전화번호				
	조정금 부과 금액									
신청내용	납부 기한									
	분할납부 희망일									
	분할납부 금액									
	분할납부 사유									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**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** 귀하

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									
처 리 절 차									
		]							
신청서 작성		<b>→</b>	접 수	<b>→</b>	검토 및 확인	<b>→</b>	처 리		
신청인					트범기위시 [[ 시 ]				
282			처 리 기 관: 특별자치시 또는 시・군・구						